

대 학 평 의 원 회 회 의 록

1. 회의일시 및 장소 : 2025년 10월 30일(목), 오후 4시 00분 / 대회의실(9동 2층)

2. 소집통보 : 2025년 10월 17일(금)

3. 의원 참석 현황 : 의원정수 11명중 9명 참석

(참석의원 : 김윤, 한, 최, 정, 강, 안, 유, 강)

(우회 : // 불참의원 : 최, 이)

4. 회의안건 : 2025학년도 제3차 학칙개정안 심의

5. 회의내용

[간사] 의장의 개회선언과 함께 회의가 진행될 것임을 말하다.

[의장] 바쁜 일정속에서도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개회 및 의결정족수 요건이 갖추어 졌음을 말하다. 이어 오늘은 단일 안건으로 2025학년도 제3차 학칙개정안 심의임을 말하고 먼저 주무부서로부터 전체적인 학칙 개정의 내용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에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어떤지 의원들의 의견을 묻자 의원들 반대 없이 동의하여 세부내용에 대한 주무부서의 설명을 요청하다.

[교무팀장] 등단하여 제3차 학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6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의 전체적인 인원수는 변경이 없지만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과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이 있으며, 2025년 8월 1일자 및 10월 20일자 대학 직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학칙 제8조에 반영하기 위함이고, 고등교육법시행령이 2025년 6월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어 이를 학칙 제9조의2의 전문기술 석사과정에서 반영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관련 하위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음을 언급하고, 개정된 조문은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에서 진행 중인 패스트트랙과도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며, 제28조 전과에는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의 전출정원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여 학생 모집시 반영하고자 함이며, 모집 정지 학(부)과 학생들이 복학할 때 기존의 전과가 아니더라도 특별전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모집 정지 학과 휴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자 함이며, 기타 별표3에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학과를 삭제하여 학사업무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부칙에서 대학 직제규정이 2025년 8월 1일자와 10월 2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 부분을 소급하여 적용하고, 특별전과 부분도 신청자는 없었지만 제도가 시행되었으므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제3차 학칙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의장] 상세한 설명에 감사를 표하고 각 의원들의 의견을 묻다.

의 장		부의장		평의원	
김 =	[Handwritten Signature]	한 :	[Handwritten Signature]	유경 -	[Handwritten Signature]

[의원 유] 특별전과를 하면 의료기사 관련 학과로도 입학정원에 제한 없이 전과가 가능한지와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전과나 전공배정으로 타과로 이동하게 되면 배정받은 학과의 정원이 모집정원 보다 많아지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묻다.

[교무팀장] 2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먼저 특별전과라고 해서 일반전과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며, 상위법의 전과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고 다만, 시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시행되는 전과와는 다르게 복학시점에 모집 정지 학과 학생들이 복학할 학과가 폐과 되어 수업 여건이 되지 않아 전과를 요청했을 때, 학과 수요 조사 등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전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답변하고, 이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료기사에 관한 학과는 정원이 제한되어 결원이 생겼을 때만 전과가 가능한 것이고, 그 외에 학과는 학과별 정원 제한을 하지 않으므로 즉 우리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라면 이미 전체 정원의 범위 안에 있는 학생이므로 일부 학과가 정원이 초과 되더라도 문제가 없음을 말하다.

[의원 한] 별표 3에서 변경 전 학과 학생이 졸업이 늦어질 경우 비고란의 시점에서 변경 후의 학과로 졸업이 되는 것인지 묻다.

[교무팀장] 학과명이 변경된 후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할 시기가 되면 기존의 졸업탈락자는 변경된 학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임을 답변하다.

[의장] 개정안 제28조를 보면 "본조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보다 "제28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다. 이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서 타 학과로 전과하는 것이 제도상 문제가 없는지 묻다.

[교무팀장] 규정의 문구는 의장님의 의견과 상위 규정 사례를 검토하여 수정하겠음을 답변하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전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과가 불가능 하지만 전문대학 학사편람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폐과되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구체적으로 전공심화과정은 폐과에 의한 전과라 하더라도 유사학과로의 전과만 허용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최종 심의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됨을 언급하고 이런 사항들을 학칙에 다 명시할 수 없어서 세부 내용은 모집공고나 모집요강에 명시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규정화 하고자 함임을 답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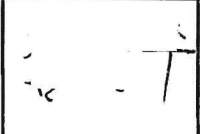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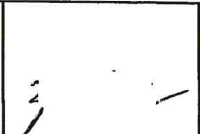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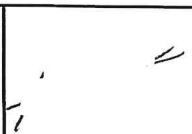
[의 장]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한 답변(Q&A)이 제시되어 있다면 제도적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 대학에 시행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을 언급하고, 학칙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각 위원들께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지 묻다.

[각 의원] 이에 참석의원 추가 질문이 없음을 표시하자 안. 의원이 부의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발의하다.

[의 장] 각 의원들께 반대 의견이 있는지와 동의와 재청을 요청하다.

[각 의원] 이에 참석의원 전부 부의안건에 대해서 반대 없이 동의하고 재청하다.

[의 장] 이에 금일 상정된 제3차 학칙개정안에 대한 심의 안건이 일부 조항의 문구 수정을 조건으로 참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심의·의결됨을 선포하고 회의록 간서명은 김 의장과 한 부의장 및 유 평의원이 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마치다.(16시 39분 산회)

의 장		부의장		평의원	
김		한		유	

2025년 10월 30일

대전보건대학교 평의원회

의 장 김

부의장 한

평의원 최

평의원 정

평의원 강

평의원 최

평의원 안

평의원 유

평의원 이

평의원 강

평의원 우

Handwritten signature of the Chairman (김)

Handwritten signature of the Vice Chairman (한)

Handwritten signature of the Member (최)

Handwritten signature of the Member (안)

Handwritten signature of the Member (유)

Handwritten signature of the Member (강)

Handwritten signature of the Member (우)